

#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0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박영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40명)

## 1. 제안이유

-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월세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니터링단 운영
2.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 금융지원 상담
4. 주택임대차 상담
5. 전세가격 상담
6.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7. 법률지원 서비스
8. 그 밖에 시장이 전·월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